

# 서울패션허브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2023년 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서울시 동북권 의류제조업체(의류·제조 사업자 등록 필)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및 협업 제품 기획을 통한 온·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“2023년 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”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8.

서울패션허브 거점별 패션지원센터

1. 사업명 : 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지원사업

2. 사업기간 : 2023년 8월 ~ 11월

3. 접수기간 : 2023년 8월 10일(목) ~ 8월 31일(목)

○ 센터 운영시간 :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신청문의 (마감일 오후 5시 신청마감)

4. 모집대상 : 동북권 소재 의류제조(봉제) 분야 사업자등록업체

구분	내용
기본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서울시 동북권 소재 사업자등록된 의류제조업체(임가공 봉제업체)</li><li>▶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(c14. 141~144까지의 해당업종)</li><li>▶ 제출서류 완비 업체(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업체)</li><li>▶ 사업기간 중 이사나 폐업예정인 없는 업체</li></ul> (※ 기준일자 : 공고일로부터 ~ 2023년 12월)
신청조건 (중 1개 충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시제품 고급화 목적으로 판로 확대 희망하는 의류제조(봉제)업체</li><li>▶ 자사 브랜드 전개, 상품개발, 마케팅을 희망하는 의류제조(봉제)업체</li><li>▶ 동북권 의류제조업체와 협업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그룹(팀)</li></ul> (자체브랜드 및 판매처를 보유한 바이어와 임가공 봉제업체간 협업생산 조건)

○ 동북권 : 6개 자치구(강북구, 광진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)

○ 제외대상 :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에 의류제조시설이 없거나 자체생산 확인불가 시 지원 제외

- 동일 사업 과거('21~'22) 수혜 이력이 있는 업체 신청 불가

- 의류제조업체 중, 샘플·패턴실, 완성 및 부분작업 업체(시야게, 구찌, 자수 등), 공방, 디자이너, 프로모션, 기타 섬유제품 생산업체(가방·침구류·애견용품 등) 신청 불가

**5. 지원내용 : 업체(팀)당 최대 500만원 한도 시제품 개발비 지원(총 8개사)**

신청구분	지원목표	내용	지원규모
시제품 고급화	3개사	샘플, 패턴 개발(외주 제작)	500만원 한도 (자부담10%)
협업샘플 개발	3개사	바이어와 봉제업체간 협업 시제품 개발(자체 제작)	
자체브랜드 상품 개발	2개사	샘플, 패턴, 아트웍 등 시제품 개발(외주 제작)	

- ※ 시제품 개발비 : 샘플비, 패턴비, 아트웍 제작비(디자인 및 원부자재 비용 지원 불가)
- ※ 샘플·패턴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류시제품 제작단가 적용 예정(별도 안내)
- ※ 외주 개발업체 이용시 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 발행 가능 업체 선정 필수
- ※ '23. 11월 까지 시제품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(의류제품만 개발 가능)

**6. 신청방법 : 현장접수, 팩스, 메일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**

구분	세부내용
연락처	02-2208-5054, 02-2208-5053
팩스	02-2208-5057
메일	<a href="mailto:sjfc@sjfc.or.kr">sjfc@sjfc.or.kr</a> (메일로 신청시 제목에 '사업명' 표기 필수)
위치	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
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sjfc.or.kr">www.sjfc.or.kr</a> ([별첨서류] 신청서식 다운로드)

※ '지원사업 신청서류' 제출 후 센터로 '전화 연락' 필수(미 확인시 접수 불가)

**7. 신청서류(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)**

- ① 2023년도 로컬 소잉인프라 활성화 사업 신청서 1부.
- ②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③ 정보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.
- ④ 사업계획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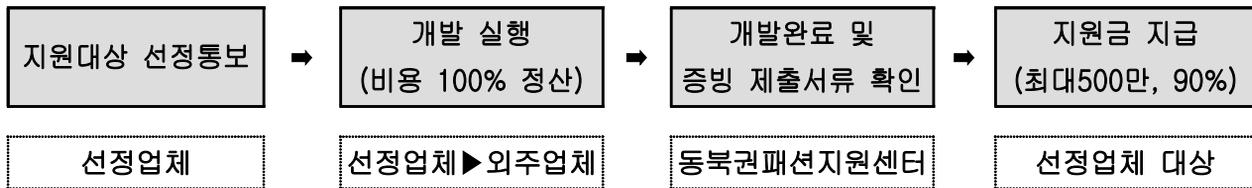
**8. 선정방법**

구분		심사 내용
절차	1. 적격심사	제출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방문을 통한 심사 대상자 확인
	2. 선정위원회	사업계획서 및 평가표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평가(우선순위 배정)

## 9. 사업추진 절차(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


## 10. 정산방법



- ※ 개발비는 선정업체가 100% 선 지급 후 센터에 비용 청구
- ※ 협업그룹은 참여한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샘플·패턴 개발비 지급 가능(조건부)
- ※ 협업 신청을 제외한 수혜업체 간 상호 시제품 개발의뢰(샘플, 패턴작업 등) 불가
- ※ 수혜업체는 정산보고서 (샘플 및 패턴 개발 사진 증빙) 제출 필수
- ※ 지원금은 개발내용에 대한 현장검수 및 증빙서류 점검 후 11월말 일괄 지급 예정
- ※ 정산증빙서류(간이 영수증 및 무거래 자료 정산 불가)

구분	계좌이체 시 제출서류	카드결제 시 제출서류
①	청구확인서	청구확인서
②	통장사본(대표자명의로)	통장사본(대표자명의로)
③	개발비 입금영수증	카드결제 영수증
④	세금계산서	-
⑤	개발품목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(공통)	

## 11. 유의사항

-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(확인 없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)
- 기재사항 누락,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
-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평가심사에서 제외
-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자등록증상 의류제조업체라도 제외 대상에 명시된 업체는 신청접수 불가

-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휴업, 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대상자 선정 후 시제품 미개발,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
- 추진 과정 중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결제시 본인, 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 이용해서 결제,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, 평가점수 우선 순으로 순차적 지원

## 12. 기타문의

- 동북권패션지원센터 02-2208-5054, 5053
  - 문의시간 : [평일]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
붙 임. 사업신청서 양식 각 1부.